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제1호·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¹⁾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즉,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²⁾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고 함)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구 분	개 요
전국조합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하는 협동조합
지방조합	광역지자체(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시·도/시·군·구의 업무구역 내에서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지방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조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 업무구역: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

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고(지방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경우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고)(안 제27조제1항제1호),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고 함)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하향하며(전국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경우 현행 70명에서 50명으로 낮추고)(안 제27조제1항제2호),

현행법상 지방조합 또는 전국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그 밖의 사업협동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와 동일하게 5명으로 낮추고(제80조 단서 삭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현행 10개 협동조합의 발기인에서 5개 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안 제90조제1호)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발기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제27조(발기인) ① ----- ----- ----- -----. ----- -----

현행	개정안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u>30명</u>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u>50명</u>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u>50명</u>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u>70명</u>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u>다만,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u>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u>10개</u>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 1. ----- ----- -----<u>20명</u>-----. ----- -----<u>30명</u>----- -----. 2. ----- -----<u>30명</u>----- -----. -----<u>50명</u>----- -----. 제80조(발기인) ----- ----- -----<u><단서 삭제></u> 제90조(발기인) ----- ----- ----- -----. 1. ----- -----. ----- -----<u>5개</u>----- -----.

[표 1]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 비교

구분	업종	업무구역	발기인 수	
			현행법	개정안
지방조합 (제27조제1항 제1호)	동일업종	하나의 시·도 (광역권)	제조 30명 (도소매 50명)	제조 20명 (도소매 30명)
		둘 이상의 시·도 (광역권)	제조 50명 (도소매 70명)	제조 30명 (도소매 50명)
전국조합 (제27조제1항 제2호)	동일업종	전국	제조 50명 (도소매 70명)	제조 30명 (도소매 50명)
사업협동조합 (제80조단서)	동일업종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기초지자체)	5명	현행과 같음
	다른업종	전국 / 둘 이상의 시·도(광역권)	제조 50명 (도소매 70명)	5명
		하나의 시·도 (광역권)	제조 30명 (도소매 50명)	5명
		하나의 시·군·구 (기초지자체)	5명	현행과 같음
협동조합 연합회 (제90조제1호)	동일업종	전국	3명 (도소매 10명)	현행과 같음 (도소매 5명)
	다른업종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도(광역권)	5명	현행과 같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의 증가³⁾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감소하는 추세⁴⁾이고,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총 개수도 2019년 951개, 2020년 939년, 2021년 922개, 2022년 920개, 2023년 893개, 2024년 885개로 감소하는 추세임.

3)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자료, (2019년) 689만개 → (2020년) 729만개 → (2021년) 771만개

4)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자료, (2019년) 28개 → (2020년) 22개 → (2021년) 27개 → (2022년) 17개 → (2023년) 12개.

[표 2]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협동조합 연합회	23	23	23	23	23	21
전국조합	226	218	218	218	208	211
지방조합	313	312	305	302	301	297
사업협동조합	389	386	376	377	361	356
총 계	951	939	922	920	893	8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총 개수의 감소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과도함에 주로 기인한다는 입장임. 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 발기인수에 대한 요건이 높아서 신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개별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⁵⁾하다는 것임.

5) 중소기업중앙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2024, p.68.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 최소 받기인 수 요건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조합원간의 약간의 이해충돌에도 조정을 통한 협력보다는 신규조합을 설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또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등, 현행법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법정 최소 받기인 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업무 구역을 광역화(전국)한 사업협동조합의 증가에 따른 지방조합 또는 전국조합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완화하고자,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조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공동구매·판매와 같은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받기인 수 조정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업종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전국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늘리고(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 또는 전국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80조 단서 신설)함으로써 그 밖의 사업협동조합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보다 가중된 기준을 설정한 바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최소 발기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개정안의 내용 중 현행 제80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부분(안 제80조)의 경우 사업협동조합의 영세화, 전국조합과의 기능 중복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⁷⁾.

문 의 처
02) 6788-5463

7) 현행 제80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해당 단서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지방조합 및 전국조합의 법정 최저 발기인 수를 완화하게 되면(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협동조합의 법정 최저 발기인 수도 함께 일정부분 완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